

의안번호	2210241
의 퇴 인	박덕흠의원
회 답 일	2025.6.18.
추계번호	25B2723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9조 (포상)	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기관·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1. (현행과 같음) 2. <u>산불진화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·단체 <신설></u> 3. ~ 5. (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)	
		<u>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함(제2항 신설)</u>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함(제3항 신설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69조 (포상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은 ‘산불 진화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·단체’를 포상대상으로 규정하고, 각 포상대상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임

○ 현재 산림청은 「산림보호법」 제 48조¹⁾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²⁾에 따라

1) 제48조(포상) 산림청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·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

‘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’을 통해 산불방지,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·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·단체에 대하여 3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

－ 참고로 산림청에 따르면 ‘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’ 예산은 2025년 기준 2,100만원이며, 2023~2024년간 지급사례는 없음

- 개정안은 시행예정법률인 「산림재난방지법」을 개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액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으로, 아직 「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」이 제정되기 전이나, 현행 「산림보호법」 및 하위법령과 비교하면 개정안의 시행으로 ‘산불방지,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·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·단체’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의 상한이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됨
- 개정안이 시행되면 포상금 지급액 상한의 상향조정 등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규모 및 지급액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가.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·제2호를 위반한 자(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
나.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

다.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

2. 산림병해충의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자

3. 산불방지,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·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·단체

4. 산사태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자

2) 제33조(포상금의 지급)

① 법 제48조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거두어들인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 임산물 가액의 합산액에 대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, 그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.

② 법 제48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
③ 법 제48조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

(자료: 「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」 [별표 1])

1. 징역형, 벌금형 등에 따른 포상금

구 분		포 상 금	비 고
징역형 (금고형)	2년 이상	- 300만원 단, 피해규모가 1ha 미만의 경우에는 150만원 지급	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징역형에 준하여 지급함
	2년 미만	- 200만원 단, 피해규모가 1ha 미만의 경우에는 100만원 지급	
벌 금 형		-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, 최고 50만원, 최저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	
신고·기소유예		- 10만원	

※ 산불가해자를 신고하여 검거하였으나, 타법령 등의 사유로 수사기관에서 과태료부과·훈방 등 사건이 외로 처리된 경우에는 10만원을 지급

2.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

- 지급률 : 「산림보호법」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
- 지급액 : 최고 10만원, 최저 3만원

3. 지급제외

- 산불 관련 담당공무원·산불감시원·산불진화대 등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제한